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목 차

■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	2
3. 시사점	13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중국경제팀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Executive Summary

□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 개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에게 대한 美中 양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향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 대한 美中の 산업 및 유형별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은 WTO 기준에 따라 기술 장벽(TBT), 위생 및 검역(SPS), 반덤핑, 통관거부 등을 대상으로 전체, 산업별, 유형별 기준 및 사례 등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보호무역) 美中の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는 SPS, TBT 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9~2016년 누적기준으로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은 전체의 90%가 TBT, SPS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TBT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중국은 동기준 각각 814건, 1675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배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TBT, SPS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특히, 중국은 2000~2008년 대비 2009~2016년 우리에게 대한 TBT, SPS 건수가 각각 1.5배, 3.6배 급증했다.

(산업별) 첫째, 2008년 이후 美中の 對 한국 산업별 기술 장벽(TBT) 건수는 주로 전기·전자 부문이 많이 증가했다. 미국의 對 한국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 식약 17.5%, 자동차 15.1%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도 동기준 전기전자 15.9%, 기계 14.5%, 자동차 13.4% 등 순으로 높았다. 특히, 품목중에서 2008년 이후 미국이 중국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분야는 기타를 제외한 전체 12개 품목 중 8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둘째, 美中の 對 한국 산업별 위생 및 검역(SPS)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2009~2016년 누적 기준, 美中の 對 한국 식품·의약품에 대한 SPS 통보 건수는 각각 1,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반덤핑 조치는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중국은 화학제품 품목에 대한 對 한국 규제가 강화되었다. 2016년 8월 현재, 규제 및 조사 건수로 볼 때,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반덤핑 건수는 전체 23건 가운데 약 75%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차지한 반면, 중국은 동기준 전체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최근 3년간 우리에게 대해 미국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중국은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2015년 기준, 미국의 對 한국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총 119건으로 전체 품목의 약 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중국은 동기준 가공식품이 전체 통관 거부 건수의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對 세계 통관거부 중 한국은 상위 5번째로 많은 국가에 속했으며, 그 사유는 50% 정도가 금지성분 함유 및 기준치 초과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기준 및 사례) 첫째, 美中の TBT 조치는 주로 강제 및 임의인증 제도에 근거하며 최근 우리에게 대해 전자제품 부문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19가지의 CCC 관련 인증 제도를 통해 TBT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82가지의 강제 및 임의인증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둘째, SPS 조치는 美中 모두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3가지 측면에서 검역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검역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美中の 對 한국 SPS 조치는 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위생 허가 기준에 대한 검역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복잡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농산품 등 식품에 대한 세균치 허용 기준 상향 등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셋째, 최근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조치 양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반덤핑 관세뿐 아니라, 상계 관세 등을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우리에게 대한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으로 최종 판정된 품목은 전체 18개 중 7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품목은 상계 관세가 50%가 넘는 품목도 열연강판, 냉간압연강판, 세탁기 등 3가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에게 대해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인 품목이 전체 11개 품목 중 5개에 이르고 있다.

종합적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양상을 볼 때, 미국보다는 중국이 차이나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TBT, SPS 등 부문에서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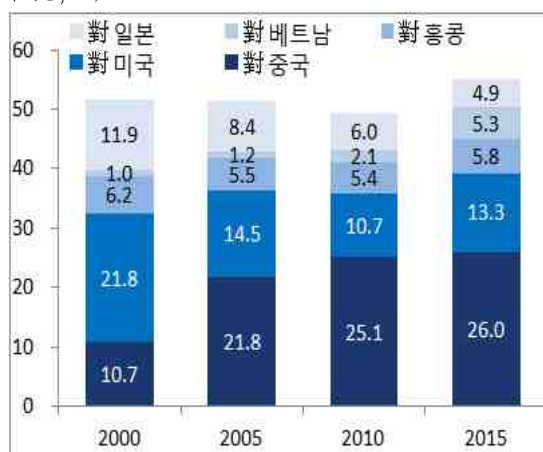
■ 시사점

최근 미국과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대외 수출 타격 우려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 제품이 갖는 고유한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기업 스스로도 자구책 마련안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식약 등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기밀 누출 및 지적권 침해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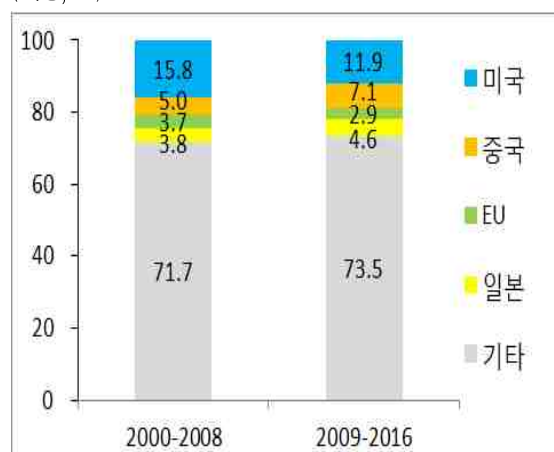
- 우리의 美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에게 대한 美中 양국의 보호무역 장벽 강화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음
 - 한국은 美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출의 약 40%에 이룸
 - 한국의 對美 무역의존도는 2000년 11.9%에서 2015년 8.3%로 소폭 하락했으나, 동기준 對中 무역의존도는 5.6%에서 16.5%로 급증¹⁾
 - 한편, 한국은 총수출에서 美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의미하는 수출의존도가 2000년 32.5%에서 2015년 39.3%로 점차 상승하고 있음
 - 더욱이 주요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중 美中の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비중은 2000~2008년 15.8%에서 2009~2016년 11.9%로 다소 감소
 - 하지만, 동기준 중국은 각각 5.0%에서 7.1%로 소폭 증가하는 등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양상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美中の 한국에 대해 산업 및 유형별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
(비중, %)



자료 : 무역협회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한국의 5대 수출국 대상.

< 對 한국 보호무역의 국가별 비중 >
(비중, %)



자료 : WTO I-TIP 자료로 현경연 계산.
주 : TBT, SPS,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수량제한, 반덤핑 등 전체.

1) 한국의 전체 무역의존도는 2000년 59.3%에서 2011년 89.3%까지 급증하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현재 7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

2.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

○ (연구 방법) WTO의 기준에 따라 각 부문별 통보문을 활용해 美中の 우리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를 산업별, 유형별 사례 등 측면에서 살펴봄

- 보호무역은 일반적으로 관세, 비관세 및 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 국가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적 적용
 - UNCTAD에 따르면, 보호무역은 관세,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함²⁾
 - 또, 보호무역 범위는 WTO 기준에 따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치 및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치 등으로 구분³⁾
- 이에 따라,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에 대해 전체 보호무역 건수, 산업별(TBT, SPS⁴⁾, 반덤핑, 통관거부), 유형별 사례 등으로 나눠 살펴봄
 - 美中の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건수를 전체, 산업별, 유형별 등 3가지로 구분
 - WTO 기준에 따라 보호무역 건수는 해당조치 시행 건수 및 발의 건수를 합해서 계산

< 연구 범위 및 내용 >

구분	연구 내용	출 처
연구 대상	• 미국, 중국 → 한국	- WTO I-TIP - 국가기술표준원 - WTO 통보문 - Trade-NAVI - NTB 포털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연구 기준	• WTO 기준에 따른 보호무역 - 보호무역 건수는 해당조치 시행(entered into force) 건수 및 발의(initiated) 건수의 합계	
연구 방법	• 전체, 산업별, 유형별 사례 - 전체 : 보호무역 전체 건수 - 산업별 : TBT, SPS, 반덤핑, 통관거부 - 유형별 기준 및 사례 : 인증제도, 피해 사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통관거부는 보호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간주, 보호무역의 범위에 포함.

2) 비관세 장벽은 가격조치(관세 및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비가격조치(금융조치, 수량제한, 반독점), 기술조치(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등), 제도적 조치(무역관련 투자조치, 비수출 관련 보조금, 정부조달 제한,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로 세분화 됨.

3) 보호무역은 WTO 기준에 따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치(All Members),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Bilateral), 모든 국가 혹은 특정국을 상대로 하는 조치(All Members or Bilateral)로 구분.(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1】에서 기술)

4)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WTO회원국 간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정을 말하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약칭 '위생 및 검역')이란 WTO 회원국 간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1) 전체 보호무역

○ 美中の 의 보호무역 조치는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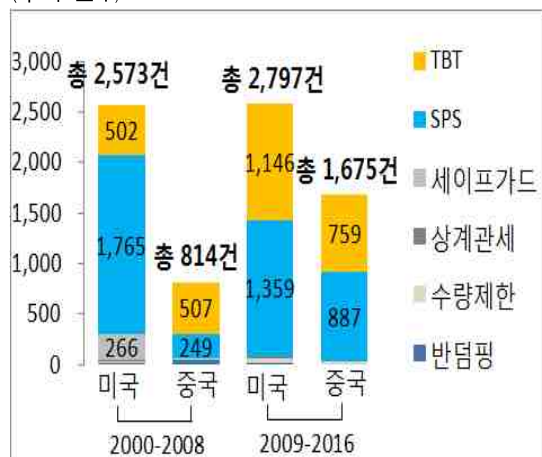
- 2009~2016년 누적기준으로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은 전체의 90%가 TBT, SPS에 집중됨

- 미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TBT 부문이 크게 증가
- 한편, 중국은 동기준 각각 814건, 1,675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TBT, SPS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우리에게 대한 보호무역이 2배 급증

- 특히, 중국은 2000~2008년 대비 2009~2016년 우리에게 대한 TBT, SPS 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

- 2000~2008년 대비 2009~2016년, 미국은 우리에게 대해 TBT 건수가 2.3배 증가함
- 반면, 중국은 동기준 TBT와 SPS가 각각 1.5배, 3.6배로 모두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냄

<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건수 >
(누적 건수)



< 美中の 對 한국 보호무역 건수 증가율 >
(배율)

구분	TBT	SPS
	'00~'08년 대비 '09~'16년 누적건수 배율	
미국	2.3	0.8
중국	1.5	3.6

자료 : WTO I-TIP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TBT와 SPS 건수는 상대국으로부터 비관세조치를 받았다고 통보하는 국가가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기준으로 WTO에 보고한 통보문을 근거로 집계됨.

2) 2016년은 8월까지 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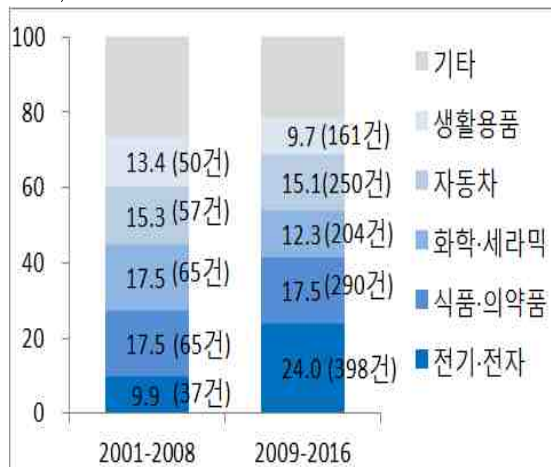
2) 산업별

① 기술 장벽(T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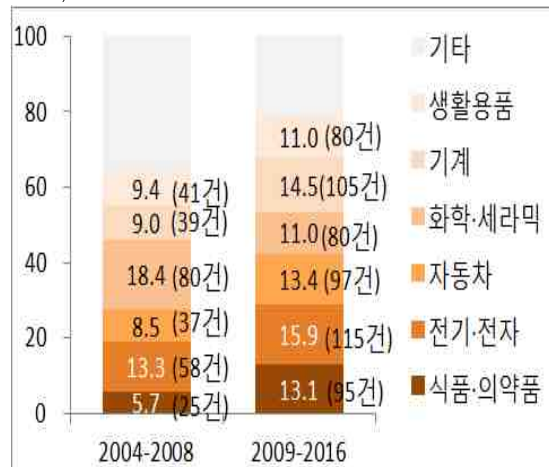
○ 2008년 이후 美中の 對 한국 산업별 TBT 통보 건수는 주로 전기·전자 부문이 많이 증가

- TBT 부문에서 美中の 對 세계 한국 산업별 보호무역 비중은 전기·전자 부문이 2008년 이후 급증
 - 미국의 對 한국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0%, 식약 17.5%, 자동차 1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국의 경우, 동기준 전기·전자 15.9%, 기계 14.5%, 자동차 13.4%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중국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분야는 정보디지털, 전기·전자, 식약, 자동차, 화학세라믹 등으로 나타남
 - 2009~2016년 누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美中の 품목별 TBT 통보 건수 중 중국 대비 미국 비율이 2배 이상인 품목은 12개 품목(기타 제외) 중 8개로 조사됨

< 미국의 산업별 TBT 통보 건수 >
(비중, %)



< 중국의 산업별 TBT 통보 건수 >
(비중, %)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 1)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은 2004년부터 조회가능.
- 2) 각 시기는 누적기준이며, 2016년은 8월까지 누적임.
- 3) TBT 통보문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도 적용 대상임.
- 4) 산업별 통보건수는 WTO에 보낸 통보문이라든가 여러 산업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치가 중복 계산될 수 있음.

② 위생 및 검역(SPS)

○ 美中の 對 한국 산업별 SPS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대한 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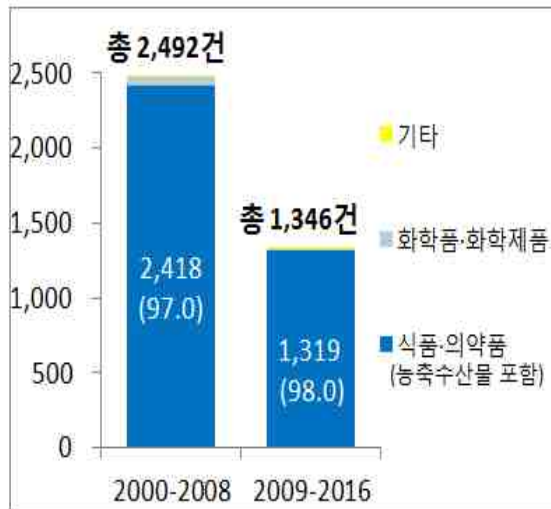
- 우리에게 대한 SPS 통보건수가 미국은 감소하고 중국은 증가

- 미국의 對 한국 산업별 통보 건수는 2000~2008년 2,492건에서 2009~2016년 1,346건으로 감소
- 반면 중국은 2002~2008년 278건에서 2009~2016년 955건으로 급증하는 등 검역 기준이 크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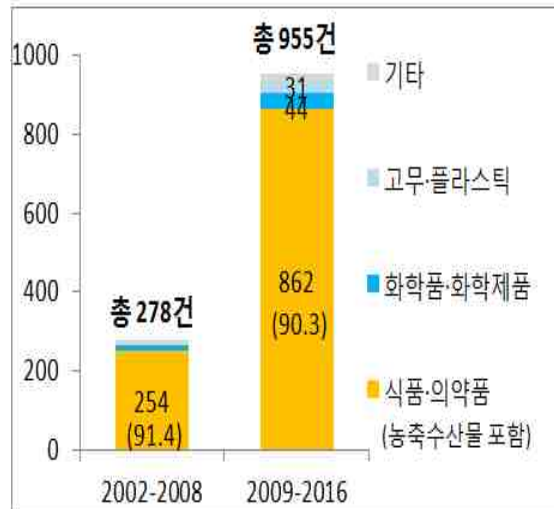
- 한편, 美中の 對 한국 품목별 SPS 통보 건수 중 식품·의약품은 미국과 중국 모두 전체 품목 중 90%에 이르고 있음

- 2009~2016년 누적 기준, 美中の 對 한국 식품·의약품에 대한 SPS 통보 건수는 각각 1,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비중을 보임

< 미국의 산업별 SPS 통보 건수 >
(누적 건수)



< 중국의 산업별 SPS 통보 건수 >
(누적 건수)



자료 : WTO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2016년은 8월까지 누적임).

- 1) 중국은 WTO SPS 통보문이 2002년부터 조회가능.
- 2) ()는 비중임.
- 3) SPS 통보문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도 적용 대상임.
- 4) 식품/의약품 등의 플라스틱 재료 용기/포장재에 환경호르몬(폴리아미드수지,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등이 들어있을 경우, 해당 용기/포장재에 대한 제재 조치는 고무플라스틱 분류로 구분함.
- 5) 산업별 통보건수는 WTO에 보낸 통보문이라더라도 여러 산업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치가 중복 계산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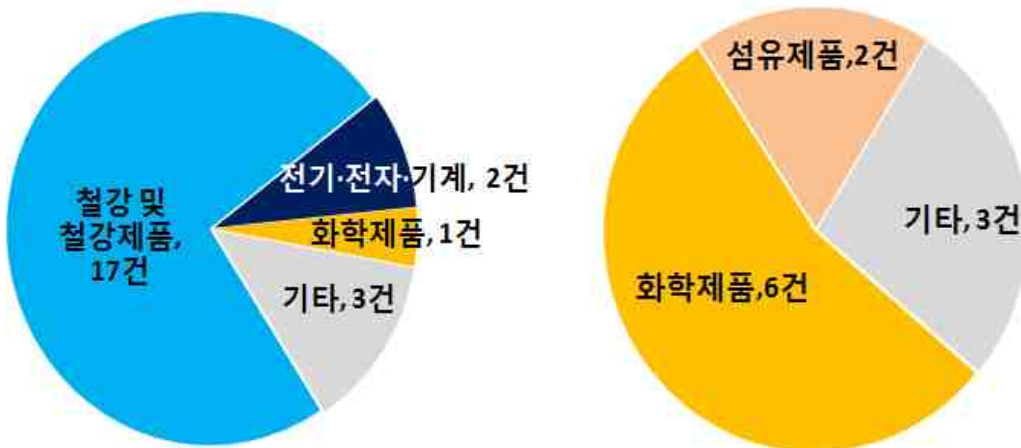
③ 반덤핑(Anti-Dumping)⁵⁾

○ 최근 美中의 對 한국 반덤핑 분야는 미국 철강 및 철강제품에서, 중국은 화학제품 부문에 대해 규제가 강화됨

- 미국의 對 한국 반덤핑 건수의 70% 이상이 철강 및 철강제품에 집중됨
 - 2016년 8월 현재, 규제 및 조사 건수의 경우,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반덤핑 건수는 전체 23건 중 약 74%가 철강 및 철강제품에 쏠림
 - 이어서 동기준 전기·전자·기계 2건, 화학제품 1건 등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의 주력 업종에 반덤핑 조치가 집중됨

- 반면 중국은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건수가 대부분임
 - 2016년 8월 현재, 규제 및 조사 중인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건수는 전체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아크릴 섬유, 광섬유 등 섬유제품이 2건으로 조사됨

< 미국의 對 한국 반덤핑 조치 건수 > <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조치 건수 >
(누적 건수) (누적 건수)



자료 : NTB 포털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16년 8월 31일 현재, 규제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수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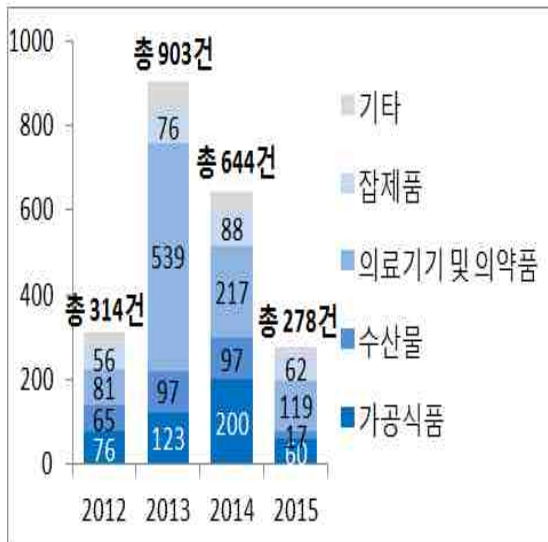
5) 반덤핑 조치는 해당국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로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라고 함.

④ 통관거부

○ 최근 3년간 미국은 우리에게 대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중국은 가공식품에 대해 통관거부 비중이 높은 수준임

- 미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 품목의 대부분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미국의 對 한국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119건, 잡제품 62건, 가공식품 60건 등 순으로 많게 조사됨
 - 특히, 2013년의 경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총 539건으로 미국의 전체 대한민국 통관거부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한편, 우리에게 대한 중국의 통관거부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기준, 중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 건수 101건의 약 40%인 40건이 가공식품이고, 다음으로 22건이 잡제품인 것으로 계산됨
 - 가공식품의 경우, 2012~2014년까지 동기준 각각 79%, 88%, 73%로 기타 품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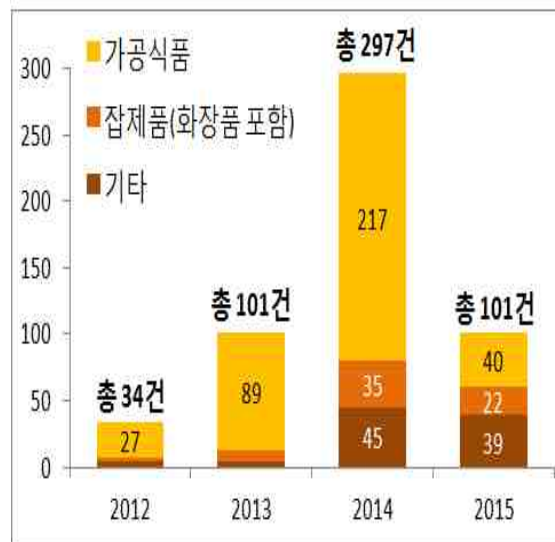
< 미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 건수 > (건수)



자료 : Trade-NAVI 자료로 재가공.

주 : 기타는 기계, 농산물, 생활용품, 임산물, 축산물 등을 의미.

< 중국의 對 한국 통관거부 건수 > (건수)



자료 : Trade-NAVI 자료로 재가공.

주 : 기타는 수산물, 생활용품 등이며, 각 연도마다 차이가 있음.

○ 특히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의 對 세계 통관거부 중 한국은 상위 5번째 국가에 속하며, 중국의 우리에게 대한 통관거부는 금지 성분 함유가 대표적인 사유로 조사됨

- 2015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통관거부를 당한 5위 국가로, 한 해 동안 총 101건의 통관거부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됨

· 2015년 기준,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진행한 통관거부 건수는 총 1,967건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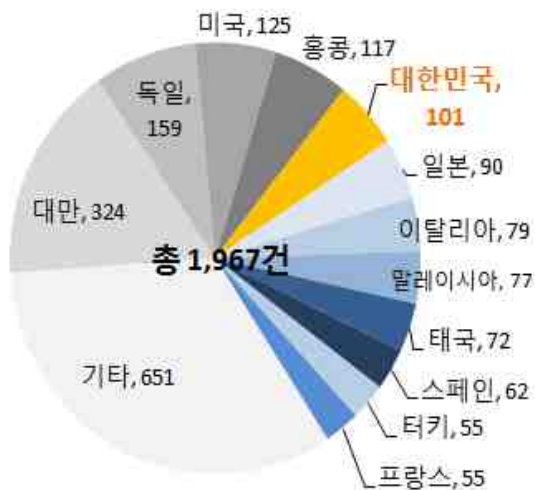
· 국가별로는 동기간 대만(324건), 독일(159건), 미국(125건), 홍콩(117건), 한국(101건)등 한국은 5번째 많은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관거부 사유는 주로 금지성분 함유, 라벨링/포장 불량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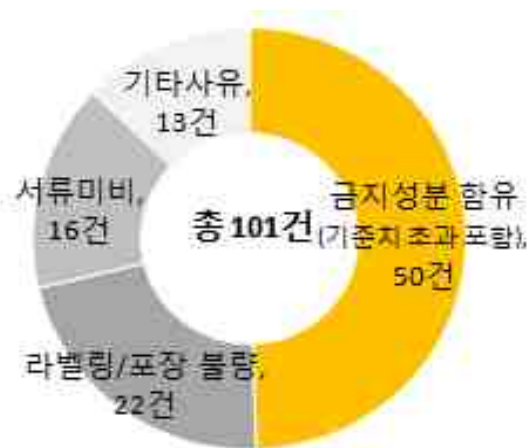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중국이 한국에 대한 통관거부 101건 중에서 금지성분 함유 및 기준치 초과 건수는 50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

· 이어서 라벨링/포장 불량 건수도 전체의 21.8%인 22건으로 집계됨

< 중국의 국가별 통관거부 건수(2015년) > (건수)



< 중국의 對한국 통관거부 사유(2015년) > (건수)



자료 : Trade-NAVI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가공.

3) 유형별 기준 및 사례

① 기술 장벽(TBT)

- 美中の TBT 조치는 주로 강제 및 임의인증 제도를 근거해 품목별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주로 CCC⁶⁾ 등 제도를 기준으로 TBT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83가지의 강제 및 임의인증 제도에 따라 시행
 - 2016년 10월 현재, 미국과 중국의 TBT 관련 강제 및 임의인증 제도는 각각 20가지, 83가지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⁷⁾
 - 최근에는 美中 모두 우리에게 대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부문에 대한 기준이 강화

< 美中の 對 한국 주요 TBT 기준 및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미국	임의인증 (Energy St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원공급장치 및 배터리 충전기의 에너지 효율 강화가 목적 (2012년 4월 WTO에 통보) - 에너지효율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에너지스타 라벨을 부착 - 주로 건축물제품(창, 마감재 등), 전자, 가전, 사무기기, 온수기, 배터리, 조명기구/환풍기, 냉난방기기 등 8대 품목군에 대해 적용 → 임의인증에 해당하지만, 美정부가 세금혜택을 부여함 → 국내의 S社, L社의 TV제품이 해당인증 조작의혹에 연루된 적 있음(2016년)
	강제인증 (Lighting Fact Lab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조명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표시 및 납성분 함유량 표시를 강제 의무화 (2012년 4월 WTO에 통보) - 전구의 밝기(Lumen), 연간 유지비용, 수명, 색온도, 에너지 사용량(Watt) 및 납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라벨에 납 함유량을 표기 필수 - 백열등, CFL, LED 전구 등 일반 가정용 전구가 해당됨 → 위반시 민사상 벌금, 명령구제(injunctive relief) 처벌 시행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 (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규제 -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개정,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현지 시험소 정보 및 샘플 송부, 현지 시험 등 대응 준비기간 부족으로 수출애로 발생 → 최소 3개월 시행유예 요청후 중국 정부가 시행시기 1년 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라벨링 규제 - 오바 라벨링(제품정보 덧붙이기) 금지, 화장품의 효능 표기 시 효능검증 제 3자 입증 등으로 수출지연 및 비용부담 발생 → 오바 라벨링 조항 삭제, 3자 효능표기 검증에 대해 미국·캐나다·EU등과 공동 대응 중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6) 중국의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s)는 전기안전, 건축자재, 소방용품, 방법, 코팅제품, 농기계 등 분야에 걸쳐 다수의 상품에 대한 강제인증을 요구함(【참고 4】 참조).
 7) 2016년 10월 현재, 중국과 미국의 인증제도는 각각 23가지, 89가지이며, TBT, SPS에 대한 인증 성격을 가지나, TBT관련 품목이 대부분이며, SPS 관련 인증제도는 각각 3가지, 6가지임(【참고 4】 참조).

② 위생 및 검역(SPS)

○ 미국과 중국 모두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검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이 최근 상대적으로 검역 기준을 상향하는 양상

- 美中の 對 한국 SPS 조치는 주로 위생 허가 기준에 대한 검역 사례가 대부분이나, 미국보다 중국에서의 기준이 엄격해 해소가 지연

· 중국의 경우,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농산품 등 식품에 대한 세균치 허용 기준 상향 조정 등 까다로운 기준치 요구 빈번

< 美中の 對 한국 분야별 SPS 검역 기준 및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미국	식품 강제인증 (US F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식품의 음식물시설 사전 등록 규정,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통보 규정 산화 및 저산통조림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FDA에 회사명, 주소, 가공시설 및 가공방식, 각 시설에서 가공되는 모든 음식의 목록 등을 제출 농산물 재배/수확/포장 기준, 식품제조기준, 식품위해요소분석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한국 삼계탕은 10여 년간 해당 기준에 의해 對美 수출이 불가능하다가 2014년 8월이 되어서야 수출이 가능해짐 → 국내의 도축장 2곳(H社, D社), 가공공장 2곳(H社, M社)이 對美 수출 허가 받음
	의약품 강제인증 (US F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방약을 중심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의 승인 획득이 필수 신약, 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 → 2015년까지, 국내 업체 2곳(L社, D1社)의 제품만 美 FDA 의약품 승인을 받음 → 2016년 한 해, 국내업체 3곳(D2社, S1社, S2社)이 추가 승인을 받음
	화장품 임의인증 (US F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에 대한 정기검사 혹은 생산시설 정기검사, 샘플분석 등을 통해 관련 기준사항 충족 필수 對美 수출 화장품은 반입 시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의 검사 필요 몸의 세척, 피부보습제, 향수, 립스틱, 손발톱미용화장료, 눈 주위와 얼굴의 미용 화장료, 샴푸, 파마약, 염모제, 치약 등 제품이 해당됨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 (CF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화장품 인허가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2~6개월 소요)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8개월 소요)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엄격한 동물실험이 요구됨
	식품 행정허가 (CF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함 보건식품의 경우 중국 당국이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해, 성분구성이 14가지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만 위생허가증 발급 → 5년근 이상의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 받고 있음 특정 농산품에 대한 검역기준 중국은 수입산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엄격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려움 → 김치, 젓갈 등 비조리/발효 식품의 일반세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③ 반덤핑(상계관세 포함)

○ 최근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반덤핑 관세뿐만 아니라, 상계관세 등을 통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음

- 현재까지 미국의 對 한국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으로 최종 판정된 품목은 전체 18개 품목 중 7개에 이룸
- 또,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한 상계관세가 50%를 넘는 품목은 열연강관, 냉간 압연강관, 세탁기 등 3가지로 나타남

< 미국의 對 한국 반덤핑 관세(상계 관세 포함) 부과 현황 >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현황	조사개시일
4002 (ESBR고무)	- 미국산업 피해 예비 판정 발표		조사중 (5건)	2016.07
2917 (가소제)				2016.07
7202 (페로바나듐)				2016.04
7208 (철강후판)				2016.04
7405 (인동)				2016.03
	- 미국산업 피해 유효 예비판정 발표			
HS코드 (품목명)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현황	최종판정일
7208 (열연강관)	P社 3.89%	P社/D社 57.04%	(對 한국 관세부과 최종확정)	2016.08
7306 (강벽사각파이프)	H社 3.82%	없음		2016.08
7304 (유정용 강관)	H社 6.49%	없음		2016.08
7209 (냉간압연강관)	H社 34.33% P社 6.32%	H社 3.91% P社 58.36%		2016.07
7306 (스테인리스용접강관)	L社 31.70%	없음		2016.07
7210 (부식방지처리강관)	H社 47.80%	H社 1.19%		2016.05
8504 (유입식 변압기)	기타社 22%	없음		2016.03
7208 (철강후판)	H社 1.11%	H社 0.23%		2016.03
8450 (세탁기)	S社 82.35%	S社 34.77% D社 81.91%		2015.09
7312 (PC강선)	G社/D社 54.2%	없음		2015.03
7305 (송유관)	H社 6.23%	S社 0.44%		2015.12
7221 (스테인레스 선재)	S社 28.44%	없음		2015.10
7306 (연벽사각파이프)	D社등9개社 30.66%	없음		2014.06
7317 (강철 못)	D社기타社 11.8%	없음		2014.12
7225 (무방향성전기강관)	P社/D社 6.88%	없음		2014.12
5503 (폴리에스터단섬유사)	S社 7.91%	없음		2011.09
7219 (스텐냉연강관 코일)	D社 58.79%	D社 4.64%		2011.12
7306 (스탠다드 강관)	H社 1.62%	없음		2011.10

자료 : NTB 포털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반덤핑/상계 관세 합계가 높은 사례 중심으로 조사.

-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관세가 30% 이상인 품목은 전체 11개 품목 중 5개
 -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규제는 상계 관세는 없으나, 반덤핑 관세가 60% 이상인 품목이 PVC 등 3개 품목으로 조사됨

<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관세(상계관세 포함) 부과 현황 >

HS코드 (품목명)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규제현황	최종판정일
2917 (테레프탈산)	기타社 11.2%	없음	규제 중 (11건) (對한국 관세부과 최종확정)	2016.08
7225 (방향성 전기강판)	P社 37.3%,	없음		2016.07
5501 (아크릴섬유)	T社 4.1%	없음		2016.07
2917 (아디프산)	기타社 16.7%	없음		2015.10
3904 (PVC)	기타社 76.0%	없음		2015.10
2914 (아세톤)	K社 4.3%	없음		2014.06
2804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K社 48.7%	없음		2014.01
2907 (비스페놀A)	L社 6.4%	없음		2013.08
9001 (광섬유)	L社 9.1%	없음		2013.01
2910 (에피클로로히드린)	기타社 71.5%	없음		2012.06
5402 (폴리우레탄스판덱스)	기타社 61.0%	없음		2012.10

자료 : NTB 포털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반덤핑/상계 관세는 건별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사례만 기술함.

- 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에게 상계 관세를 제외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상계 관세가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은 최근 철강, 철강제품, 보일러·기계류 등에 대해 우리에게 대해 50~80%에 다라는 반덤핑 관세뿐 아니라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美中の 對 한국 반덤핑 조치(상계관세 포함) 현황 >

국가	HS코드 (품목명)	건수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중국 (11건)	HS 28, 무기화합물	1건	최대 48.7%	없음
	HS 29, 유기화합물	5건	최대 71.5%	없음
	HS 39, 플라스틱과그제품	1건	최대 76.0%	없음
	HS 54, 인조필라멘트섬유	1건	최대 61.0%	없음
	HS 55, 인조스테이플섬유	1건	최대 4.1%	없음
	HS 72, 철강	1건	최대 37.3%,	없음
	HS 90, 광학·의료·정밀기기	1건	최대 9.1%	없음
미국 (18건)	HS 55, 인조스테이플섬유	1건	최대 7.91%	없음
	HS 72, 철강	7건	최대 58.79%	최대 58.36%
	HS 73, 철강제품	8건	최대 54.2%	없음
	HS 84, 보일러·기계류	1건	최대 82.35%	최대 81.91%
	HS 85, 전기기기	1건	최대 22.0%	없음

자료 : NTB 포털 자료로 HRI 재구성.

주 1) 반덤핑/상계 관세는 건별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사례만 기술함.

2) 규제중인 건수 기준.

3. 시사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 조치 양상을 볼 때, 미국보다는 중국이 차이나 스탠다드를 내세워 TBT, SPS 등 부문에서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반덤핑 조치에서 강력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중국은 관련 제도체계의 확립 부족으로 인해 TBT나 SPS에서 자의적인 실무 프로세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주력 산업의 대외 수출 타격 우려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무역장벽에 대비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첫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

- 최근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의 對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검역 및 통관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자체 검열 시스템 강화 필요

- 또, TBT, SPS 등 보호무역 유형이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강제성 인증제도 기준을 적극 숙지, 이에 맞는 제품 품질 상향 촉진 지원책도 강구

둘째,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

-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FTA 이행위원회, WTO TBT 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

- 또, G20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 정상회의뿐 아니라, 무역중재 회의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해당국과 상설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함해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의견 제시 필요

- 해당 국가와 업종을 이해하는 지역 및 통상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각종 규제에 따른 수출애로 등에 상시적 상담 프로그램 마련 모색

셋째,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 제품이 갖는 고유한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기업 스스로도 자구책 마련안을 설계해야 함

- 미국, 중국 등은 위생허가 기준이 상의하여 향후 동일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조미김, 젓갈 등은 국내 식품의 중국내 검역 기준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차별적인 관계로 동일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특유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삼계탕 등 한류를 대표하는 식품이 對 중국 수출 과정에서 제약이 커질 경우 자체적 브랜드 가치 하락도 우려됨

넷째, 식약 등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기밀 누출 및 지적권 침해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對 중국 식약 제품 수출에서 중국 내 수입 통관 과정 상 나타날 수 있는 검역과 임상실험과 같은 절차 과정 중, 제품이 갖는 고유한 기술 노하우가 누출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약도 필요
- 특히, 의약품은 매 통관시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우리 제품의 고유한 특성 성분 공개로 자칫 기술적 성분 함양 비중 등 기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음
- 또, 화장품의 경우도 비특수화장품에 대한 지나친 위생허가 요구는 사용원료에 대한 가공기법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제품이 갖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음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참고 1】 보호 무역의 구분

□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All Members)

- 세이프가드 (Safeguards)
- 국영무역기업⁸⁾ 특혜 (State Trading Enterprises)
- 저율관세할당 (Tariff-rate quotas)
- 무역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위생 및 검역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등

□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 (Bilateral)

- 반덤핑 (Anti dumping)
- 상계관세 (Countervailing) 등

□ 모든 국가 혹은 특정국을 상대로 하는 조치 (All Members or Bilateral)

-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 위생 및 검역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등

자료 : WTO 기준을 참고 작성.

【참고 2】 한국의 對 중국 식품 통관절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8)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이란?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특별한 권리 또는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서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해 수출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기업이나 국가조직은 상품교역에 있어서 동일제품을 취급하는 상대국에 비해 독점적 혹은 이에 준하는 특혜를 받게 됨.

【참고 3】 중국, 미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

< 중국의 주요 강제 인증제도 >

유형	제도명	제도 내용	적용 대상 품목
TBT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 (CCC, 전기안전 분야)	-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성 등에 관한 적격심사 제도 - 품목별표준과 기술법규에 꼭 부합해야 함	차량차량안전부품, 정보통신단말기 장비, 안전설비방제품, 가정용 및 유사용도제품 등 20개 대분류의 151가지 제품
	통신제품형식승인 (SRRC)	- 수입 무선제품은 '무선전송장비 형식 승인 인증서' 획득 필수 - Type Approval Identifier 보유 필수	공공 이동통신설비, 무선 접속시스템, 전용네트워크 설비, 위성설비, 라디오/TV설비, 단거리 무선설비, 레이더, 기타 무선전파 송신설비 등
SPS	화장품 행정허가 (CFDA)	-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또는 위생허가증을 획득 필수 - 검역검사를 거쳐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 획득 필수	일반류 (두발용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입술보호/화장제품 등), 특수용도화장품 (발모제, 염색제, 자외선차단제, 기미제거류, 탈모제류 등)
	의약품 위생허가 (CFDA)	- 약품의 GMP(제조품질 관리) 인정 필수	한약, 천연약물, 화학약품, 생물학적 제제 등
	식품 수입허가 (CFDA)	- 제품 위생검사합격증서 획득 필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품검사증서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필요	가공식품 등

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 미국의 주요 강제 인증제도 >

유형	제도명	제도 내용	적용 대상 품목
TBT	자동차안전인증 (DOT-FMVSS)	- 자동차류 및 그 아이টে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수행요건 관련 규범임	브레이크 시스템, 제어 시스템, 연료시스템, 오토바이 헬멧, 안전벨트 부품, 브레이크 호스, Air 브레이크 시스템 등
	무선통신인증 (PTCRB)	- 무선통신망에 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사항 - 모든 단말기는 해당 인증획득이 필수	UTRA(UMTS), Cellular GERAN(GSM), E-UTRA(LTE) 단말기 등
	친환경 인증 (Green Guard)	- 실내 환경 및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 실내 공기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을 극소량 방출하는 제품임을 보장하는 인증제도	실내공기청정, 빌딩·건설, 미생물 저항제품 등 (접착제, 어린이제품, 상업사무용가구, 천장재, 바닥재, 절연재, 조명, 매트리스 및 침구, 페인트 및 코팅, 패널, 섬유, 벽지 제품, 등)
SPS	식품안전 (US FDA)	- 제품시설 혹은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샘플분석 필요	산화 및 저산통조림식품/음식물 시설 등은 시판전 검사 및 사전승인 필수, 동물용 사료/화장품/일반식품류 등
	의약품 인증 (US FDA)	-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의 승인 획득이 필수	신약, 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

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참고 4】 중국·미국의 부문별 인증제도 시행 현황 (2016년 10월 현재)

중국 - 23가지

- | | | | |
|------------------|----------------|------------------------------|---------------|
| 1. CCC(건축자재) | 2. CCC(농기계) | 3. CCC(방법) | 4. CCC(소방용품) |
| 5. CCC(전기안전) | 6. CCC(코팅제품) | 7. CCS | 8. CFDA(의료기기) |
| 9. CFDA(의약품) | 10. CGC 태양광 | 11. CN_ENERGY LABEL | |
| 12. CPA(계측기) | 13. CQC | 14. CQC 태양광 | |
| 15. CSEL(특수장비) | 16. China RoHS | 17. LA Certification(노동안전인증) | |
| 18. NAL(유무선통신) | 19. NEPSI(방폭) | 20. NIM | |
| 21. SRRC(무선전송장비) | 22. 수입허가(식품) | 23. 화장품 행정허가 | |

미국 - 89가지

- | | | |
|--|-------------------------------|------------------------------------|
| 1. 3-A(유제품가공) | 2. AAMA(건축자재-창문,문) | 3. AAR(철도운송장비) |
| 4. ABS(선박) | 5. ACMI(미술창작재료) | 6. AEM(유압브레이커) |
| 7. AGA | 8. AHAM(가전기기) | 9. AHRI(냉난방공조) |
| 10. ALI(자동차리프트) | 11. AMCA(공기시스템) | 12. AMECA(자동차장비) |
| 13. ANSI | 14. API(가스기기) | 15. ASME(압력용기) |
| 16. ASSE(배관인증) | 17. ASTM International | 18. ATP |
| 19. BHMA(건축자재) | 20. BIFMA(건축자재) | 21. BISSC(제빵기기) |
| 22. Bluetooth | 23. CAPA(자동차부품) | 24. CCL(건축자재-창문) |
| 25. CPSC-CPC(장난감) | 26. CPSIA | 27. CTI(냉각탑) |
| 28. DLC QPL(LED 효율) | 29. DOD-QPL/QML(국방부조달) | 30. DOT-FMVSS(자동차안전) |
| 31. EPA-TSCA(화학물질) | 32. ETL Sanitation | 33. EX approval(폭발물) |
| 34. Energy Star | 35. FAA(항공) | 36. FCC(유무선통신) |
| 37. G7 Master | 38. GREENGUARD (미국 친환경 인증시스템) | |
| 39. Green Seal(친환경인증) | 40. HECC(하키인증) | 41. HVI(가정용공기정화) |
| 42. ICC-ES(건축자재) | 43. ICGB(하역장치) | 44. IGCC(절연유리) |
| 45. IPEMA(놀이시설) | 46. JPMA(유아용품) | 47. LHAMA(미술&공예) |
| 48. Lighting Fact Label | 49. MET | 50. ML-STD-810G(환경공학적 고찰과 시험소 테스트) |
| 51. MSHA(광산장비) | 52. NBBI (보일러 압력용기 검사자위원회) | |
| 53. NCHRP(도로안전시설) | 54. NFRC(창문효율) | 55. NIJ(방탄복인증) |
| 56. NIOSH(개인보호장비) | 57. NMMA(보트&요트) | 58. NOP(유기농) |
| 59. NRTL | 60. NSF(보건위생) | 61. Organic Content Standard |
| 62. PCI(카드지불장치) | 63. PDI(배관,배수인증) | 64. PTCRB(무선통신) |
| 65. RCRA(유해폐기물) | 66. SEI(개인보호장비) | 67. SEMI(반도체인증) |
| 68. SGCC(건축자재-유리) | 69. SMF(헬멧인증) | 70. SRCC(태양광) |
| 71. SSCC(스노우모바일) | 72. SWCC(풍력터빈) | |
| 73. 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s - Buildings & Interiors (미국친환경인증-건물과 인테리어 인증) | | |
| 74. UCalug | 75. UL | 76. UL(태양광) |
| 77. UL(풍력) | 78. UPC(배관인증) | 79. USCG(해양안전) |
| 80. USGA(골프제품) | 81. US_FDA(식품) | 82. US_FDA(의료기기) |
| 83. US_FDA(의약품) | 84. US_FDA(화장품) | 85. V-permit(공기오염) |
| 86. WHI(건축자재) | 87. WQA-Gold Seal(음용수인증) | |
| 88. Woodheater program | 89. Woolmark(섬유) | |

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주 : 강제인증 및 임의인증(자율인증) 모두 포함.